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2021. 2. 1.(월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. 15.

나. 제 안 자 : 이오상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1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68회(임시회) 제4차 교육위원회(2021년2월1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오상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○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
○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○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,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.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, 원활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있는 바,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.

○ 교육청에서는 교육부, 인천시,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방역물품 지원과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방지 등 각종 대책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, 대처가 늦는 경우가 있음.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함. 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등 노력이 필요함.

(답변) (전광용 교육국장) 본청에 코로나 안정화 대응팀을 구성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
2.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
3.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
4.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감염병 확산 방지)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,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·휴교·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

2.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④ 위원회는 「학교보건법」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(이하 "감염병대책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의(Yellow) 단계: 담당 국장
2. 경계(Orange) 단계: 부교육감
3. 심각(Red) 단계: 교육감

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